

#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9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6월 15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‘시의 사무위탁기관’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한 서울시를 의미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맞도록 ‘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’으로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‘시의 사무위탁기관’을 ‘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’으로 수정함  
(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2호).

#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2호 중 “시의 사무위탁기관” 을 “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”  
으로 각각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·출자·출연기관,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“직장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시 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·출자기관, 시의 사무위탁기관,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(이하 “적용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li> <li>3. (생략)</li> </ol>	<p>제1조(목적) -----            -----<u>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            -----<u>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</u>-----            -----.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##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투자·출자·출연기관”을 “투자·출자·출연기관,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·출자기관”을 “시 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·출자기관,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,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절차 및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기관 및 <u>투자·출자·출연기관</u>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직장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<u>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·출자기관</u>(이하 “적용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8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투자·출자·출연기관,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시 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·출자기관,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,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</u> 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절차 및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</u></p>